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배우자의 재혼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특례 신설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15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배우자의 재혼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특례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3. 12.

다. 회부연월일 : 2026.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제1항제2호 삭제 및 제27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배우자의 재혼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특례 신설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특례를 둠(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 삭제 및 제2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생략) 2. <u>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 3. ~ 5.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27조의5(재혼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특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u>

	<u>경우 유족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사항

- 현행법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¹⁾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 자녀 등 유족²⁾에게 유족연금³⁾을 지급하도록

1)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퇴직급여) 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 5. (생략)
- ③ ~ ⑨ (생략)

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 라. 손자·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규정하고 있음.

○ 유족연금은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4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받게 되고,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균분하여 지급됨.⁴⁾

- 직원의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순으로 수급권자가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는 동순위자가 되며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수급권자가 됨.

○ 그리고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①사망하였을 때, ②재혼하거나 사망한 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끝났을 때, ③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3)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 ⑦ (생략)

4)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사람의 장애 상태가 없어졌을 때 그 수급권은 상실됨.⁵⁾

○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상실되고 그 수급권은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이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재혼이 수급권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여러 공적연금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임.⁶⁾

○ 「별정우체국법」에서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의 피부양자에게 지급되고 일정 정도의 장애가 없는 자녀 등의 경우는 19세가 되면 수급권이 상실되는 등 사망 당시의 혼인관계나 생계의존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므로,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 이후 그가 부양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별정우체국 직원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연금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임을 고려하면,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

5)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끝났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없어졌을 때

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으면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으면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6)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 유족연금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에 중점을 두게 되면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혼을 통하여 새로운 부양관계를 형성한 배우자가 재혼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된 것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⁷⁾

- 다만, 해당 판례에서는 소수의견(재판관 4인)으로 ①배우자의 재산적 기여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은 점, ②실제 배우자가 재혼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보장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③재혼이 해소된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이 부활되도록 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도 생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부재한 점에서, 재혼을 사유로 일률적으로 영구히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도록 한 대상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있었음.

7)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제1항제2호 위헌제청(헌재 2022.08.31. 2019헌가31): 합헌의견 5인, 헌법불합치 의견 4인으로 합헌 결정

○ 배우자 재혼 시 유족급여수급권에 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비록 배우자의 기여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거나, 연금지급을 중지하되 일정부분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재혼 후 다시 이혼하는 경우 지급을 재개하는 등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배우자 재혼 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여부 해외 사례 >

구 분	해당 국가
연금계속지급	벨기에, 덴마크 *덴마크 : 배우자연금을 10년동안 지급하거나 평균 은퇴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결국, 재혼 시 계속 지급된다고 해서 무한정 지급되는 것은 아님
연금중지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페인: 특정조건(소득, 연령, 장애)이 있을 경우 부분/완전연금 지급 가능 *스웨덴: 새로운 결혼이 해소되거나 10년 이내 이혼/무효선언이 되면 다시 지급 가능
연금중지, 일시금지급	오스트리아, 칠레,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오스트리아: 재혼 시 월연금액의 35배를 지급(전 배우자도 동일하게 적용). 단,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로 재혼이 해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는 다시 연금지급 가능 *칠레: 2년치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프랑스: 배우자연금의 3년치 일시금을 지급. 단, 자녀연금을 받는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연금이 중지되기까지는 배우자연금도 지급됨 *독일 : 월정액의 24배 일시금을 지급(연금지급월수만큼 감액). 재혼파기 무효일 경우 24개월 경과시까지 일시금의 1/24를 적절히 분할하여 공제 *이스라엘: 36개월치 연금을 두 번(결혼시, 2년후) 일시금으로 지급 *멕시코: 3년치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자료: 박은주(2020), 「유족급여 지급실태 분석」,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p.137

- 한편, 현행법 제25조의10에 따른 분할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혼을 하더라도 그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음.⁸⁾
- 또한, 수급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유족연금 대신 유족연금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혼에 따른 수급액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수급 방식에 따라 재혼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존재함.
-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할연금과 같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직원의 연금형성에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점을 감안할 경우 개정안은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재산권 측면에서의 유족연금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고 분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갈음한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8) 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생계의존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본연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앞서 언급했듯이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의 혼인관계나 유족의 생계의존성에 따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에서 분할연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운영상 여러 차이점이 있음.

< ‘유족연금’과 ‘분할연금’ 제도 비교 >

구분	유족연금	분할연금
운영취지	유족의 생계보장(사회보장적 성격)	배우자의 재산보장 성격
지급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상속순위에 따름)	이혼한 배우자(단, 5년 이상 혼인기간 유지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수급연령	직원 사망 즉시 수급	직원과 이별 배우자 모두 65세
급여수준	퇴직연금의 60%, 동순위간 균분	최대 1/2 범위에서 혼인기간 비례
수급권 상실	사망, 재혼, 친족관계 종료 시 등	사망 시
급여이전	후순위 유족 등에게 이전	수급권 이전 없음

* 자료 : 우정사업본부, 2026. 3.

- 개정안은 재혼 후 재혼 상대방을 통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재혼으로 새로운 혼인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그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

자에게 이전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은 타 권리자에게 이전되지 않아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더 큰 유족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배우자의 재혼과 관련하여도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유족의 생계의존성 조건을 수급권의 유지·소멸 및 이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에는 유족의 범위와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규정에서 모두 명시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혼인 관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개정안은 수급권 상실 사유에서 배우자의 재혼을 삭제하면서 신설된 특례 규정에서는 사실혼과 관련되어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그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새로이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고 특례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아 사실혼 이전에 지급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계속 지급받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이는 사실혼을 한 사람을 재혼한 사람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상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차별을 둘 합리적 사정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하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지에 관하여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셋째, 배우자의 재혼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여러 공적연금과 재해보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재혼과 관련된 유족연금 제도 정비는 별정우체국법에 한정하여 논의할 수 없고 관련 제도 전반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동일한 취지로 발의된 여러 법률안이 소관 상임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그 심사 경과에 따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⁹⁾

- 마지막으로,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전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 규정을 통해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재산분할적 성격이 강한 분할연금과 부양적 성격이 강한 유족연금의 도입

9)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07) ②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1) ③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08) ④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6)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7)

목적 등에 차이 존재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연금 간 형평성을 위하여 타 연금법의 개정 여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5